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19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3
2.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등 거부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만 · 이인영 · 강준현 · 박상혁 · 천하람 · 조승래
이정문 · 염태영 · 천준호 · 민병덕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 의안번호 : 68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경고 외에 위원회 출석 및 해명,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u>하거나,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현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나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¹⁾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제재도 불가능하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외에 위원회에 출석·해명,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적시 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

를 통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²⁾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별 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2]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입법사례

근거 법률	요구 목적	제출대상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5조의6)	○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로 요청 하는 경우	○ 납세자의 과세정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u>비공개회의</u> 에 제공)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
「변호사법」 (제89조의9)	○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 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률	요구 목적	제출대상 자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 불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복사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 외부 공개 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참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8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등 거부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8조의2(고발) ① <u>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u>

현행법³⁾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별다른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증인 등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는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형량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⁴⁾ 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와 동일함.

벌칙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형량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⁵⁾

참고로, 현행 법체계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3)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⁶⁾

다만, 개정안 제18조의2제2항은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등의 거부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15

6) 2023. 9. 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9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한 기관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고, 고발 대상에는 당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음. (국회의원 조승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기관 고발”, 2023.)